

1. 개정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을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(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변경(‘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(법 제16조) 삭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절차 삭제(안 제7조, 안 제19조)
- 나. 약정 최초체결 시와 유사하게 보험약관, 보험료 산출방법 등을 변경할 때도 보험자가 환경부장관 동의를 받도록 약정체결 규정 보완(안 제10조)
- 다. 구제급여 신청, 재심사 청구의 제기 제출처를 운영기관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(안 제14조, 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환경보건법」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”로 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업방법서

② 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, 사업방법서 별지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구제급여”를 “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

호서식의”로, “첨부하여 운영기관”을 “첨부하여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”를 “환경오염피해조사단(이하 “피해조사단”이라 한다), 운영기관 임직원,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”으로, “등으로”를 “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사하여야”를 “조사하고, 그 결과를 피해조사단에 보고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”를 “피해조사단, 운영기관 임직원,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”으로, “등으로”를 “중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”를 “피해조사단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운영기관이 신청인”을 “위원회가 신청인”으로, “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”을 “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단”으로 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재심사청구의 제기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운영기관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심사청구”를 “재심사청구”로, “한다”를 “하고, 재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”로

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,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환수금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2조제2항제4호 중 “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”을 “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·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및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삭제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의 뒤쪽 중 “ 4.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(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”를 “4.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「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 환경·안전 관계 법령 및 인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관련 서류(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”로 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정보 제공 · 열람 명령의 신청 등) ① (생략)	제6조(정보 제공 · 열람 명령의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<u>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, 범위,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제공명령 신청결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환경보건법」 제9 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		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	
<u>제7조(위원회의 심의 신청 방법)</u>	<u><삭 제></u>			
<u>영 제6조제7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				
1.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를				

증명하는 서류

2. 환경오염피해의 배상 청구를 하였거나 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3.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

제10조(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사업 약정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4. ~ 7. (생략)

<신설>

제10조(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 체결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사업방법서

5. ~ 8. (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

② 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, 사업방법서 별지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에

②・③ (생략) 제14조(구제급여의 신청)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(이하 “구제급여”라 한다)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(이하 “신청인”이라 한다)는 별지 제13호서식의 <u>구제급여 신청서</u>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<u>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1. ~ 13. (생략) 제15조(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) ①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(이하 “예비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 피해의 내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<u>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</u> 관련 전문가 등으	<u>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다.</u> ③・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 제14조(구제급여의 신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----- ----- 첨부하여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오염피해조사단(이하 “피해조사단”이라 한</u>
---	---

로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단은 예비조사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원 분포 현황 등 지역 현황, 환경오염피해 발생 경과 및 내용,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현장 조사하여야 한다.

③ 운영기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피해내용에 대한 본조사(이하 “본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중에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본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본조사단은 본조사표를 작성하여 피해내용 등에 대한 정밀 현장 조사를 하고, 그 결과를 운영기관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다), 운영기관 임직원,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--- 중에서 ---.

② -----

-- 조사하고, 그 결과를 피해조사단에 보고하여야 ---.

③ -----

----- 피해조사단, 운영기관 임직원, 환경·보건·의학·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--- 중에서 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 피해조사단-----

-----.

⑤·⑥ (생략)

제16조(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)
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이 신청인에게 구제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이 추정한 구제급여 예상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심사청구의 제기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사청구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심사청구에 대한 심리·결정) ① 운영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 내용과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)
----- 위원회가 신청인-----
--- 선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단-----

--.

제17조(재심사청구의 제기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·결정) ① 위원회는 -----
----- 재심사청구-----

----- 하고, 재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에 따라 예비조사 결과,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환수금에

② (생 략)

제19조(재심사청구의 제기) 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·재결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1. 재심사청구 사항
2. 재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
3. 주문(主文)
4. 재심사청구의 취지
5. 이유
6. 재결 연월일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

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따른 재결서 정본(正本)을 보내야 한다.

③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장소에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 또는 진단을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, 진단료,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소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(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)

제22조(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법 제9조제2항에
서 규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
생에 영향을 준 사정과 같은
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경
오염피해의 원인과 관련 있는
환경·안전 관계 법령 및 인
허가조건의 준수 여부 등에
관한 ---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